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4가단22283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17.

판 결 선 고 2024. 5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7,430,136원 및 그 중 15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9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2023. 2. 22. 원고에게 별지 기재

합의서(이하 '이 사건 합의서'라 한다)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,430,136원[=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2억 원 + (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2억 원 ×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2022. 11. 1.부터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2023. 2. 22.의 전날인 2023. 2. 21.까지 113일 ÷ 365일 ×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연 12%) -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5,000만 원] 및 그 중 1억 5,000만 원(=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2억 원 -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5,000만 원)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. 9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았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(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2023. 11. 30.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),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영석

별지